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5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진성준 · 주철현
최민희 · 김종민 · 이용선
이기현 · 강준현 · 김동아
전현희 · 조인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.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

됨.

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,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산업으로서”를 “산업이자”로, “산업을”을 “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한 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8조에”를 “제8조의2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산업위기지역”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통칭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”을 “산업위기지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산업활동이”를 “주된 산업의 활동이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중 “등”을 “신청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선제대응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, 해당 지역의 주민·기업·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
2.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
3.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
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금·융자 등 금융·재정 지원
2.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
3. 국내 판매, 수출 지원과 경영·기술·회계 관련 자문
4.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·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
5.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지원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,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”을 “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 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”으로, “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, “산업위기지역계획”을 “특별지역계획”으로, “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”를 “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”를 “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”로, “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”를 “산업통상부장관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“산업위기지역계획”을 각각 “특별지역

계획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산업위기지역계획을”을 “특별지역계획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산업위기지역계획이”를 “특별지역계획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해당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”으로,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필요한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7조에 따른 지원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다만, 이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.

제11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산업위기지역계획”을 각각 “특별지역계획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 중 “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를 “경우”

로 한다.

제13조 전단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필요한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전단 중 “제8조제3항에”를 “제8조의2제1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선제대응지역계획을”을 “제8조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”로, “산업위기지역계획을”을 “특별지역계획을”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중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”을 “산업위기지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”를 “산업위기지역에”로, “설비투자, 공장의 신설·증설, 경영혁신,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”을 각각 “산업위기지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68조에 따른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

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 지원이 「산업발전법」 제33조에 따라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

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 지원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”을 각각 “산업위기지역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”을 “산업위기지역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”을 “산업위기지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중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”을 “산업위기지역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, 기술개발, 인력 양성, 창업, 판로 지원 등”을 “산업위기지역에서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책무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

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주된 산업”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<u>산업으로서</u>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<u>산업을</u> 말한다.	1. ----- ----- <u>산업이자</u> ----- ----- <u>산</u> <u>업으로서</u> <u>산업통상부장관이</u> <u>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</u> <u>을 충족한 산업을</u> -----.
2. 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”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,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·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<u>제8조에</u>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제8조의2에</u> ----- -----.
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3. (현행과 같음)
	4. “산업위기지역”이란 <u>산업위</u> <u>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</u> <u>응특별지역을</u> 통칭하는 <u>지역</u> <u>을</u> 말한다.
제3장 <u>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</u> 등	제3장 <u>산업위기지역</u> 등의 지정

의 지정 등	등
제7조(산업위기 예방조치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,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<u>산업활동이</u>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.	제7조(산업위기 예방조치) ① --- ----- ----- -----주된 산업 의 활동이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) ①·② (생략)	제8조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<u>신청</u>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	③ <u>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선제대응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, 해당 지역의 주민·기업·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</u>
④ <u>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</u>	<u><삭 제></u>

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

2.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

3.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

4.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금·융자 등 금융·재정 지원

2.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

3. 국내 판매, 수출 지원과 경영·기술·회계 관련 자문

4.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·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

<삭 제>

5.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
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지원

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
지역의 지정기간, 지정절차 등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
<신 설>

<삭 제>

제8조의2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
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부장
관은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
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
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
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
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
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
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
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
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
부

2.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
요한지 여부

3.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
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

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
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
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
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
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
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
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금·융자 등 금융·재정
지원

2.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
화 지원

3. 국내 판매, 수출 지원과 경
영·기술·회계 관련 자문

4.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
실직자·퇴직자의 재취업교육
등 고용안정 지원

5.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
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지원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
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
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
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
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

제9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(이하 “산업위기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대상 지역
2.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

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,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) ① -----
-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 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----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-----
-----특별
지역계획-----
-----산업
위기특별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<삭 제>

<삭 제>

의 필요성

3.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
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
필요한 지원 사항

4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
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
계획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사항

② (생략)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
구하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
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
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
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
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
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<후단 신설>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
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
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
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
을 20일 이상 공고하고, 해당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
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
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
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---
---산업통상부장관에게-----

-----. 이 경우 주요 산업
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
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
령령으로 정한다.

④ -----

-----특별지역계획-----

지역의 주민·기업·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·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 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수립·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,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, 공고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

-----.

⑤ -----

-----특별지역계획-----

-----.

⑥ -----특별지역계획-----

-----.

제10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) ① -----

-----특별지역계획-----

-----.

② -----

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

4.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(생략)

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특별지역계획이-----

4. -----산업통상자원부장관
이 해당-----

-----필요하다
고 인정하는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-----
-----. 이 경우
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
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
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
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
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
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
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

③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~ ④ (생략)

--특별지역계획-----
-----.

③ -----특별지역계획-----

-----.

제12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) 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경우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긴급지원)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, 고용안정,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14조(절차의 신속 진행)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

제13조(긴급지원) -----

-----경우로써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
춘 때에는-----

-----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
한-----.

제14조(절차의 신속 진행) -----

-----제8조의2제1항에-----

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
대한 지원 등

제15조(자금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(이하 “위기지역기업”이라 한다)이 설비투자, 공장의 신설·증설, 경영혁신,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<신설>

-----, -----

제8조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-----

특별지역계획을-----

-----.

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
등

제15조(자금 지원 등) ① -----
-----산업위기지역
에-----
-----대통령
령으로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

2. (생 략)

③ (생 략)

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
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
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
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
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
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
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
할 수 있다.

⑤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
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68조
에 따른 소재·부품·장비산
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
정화 특별회계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산업위기지
역-----

-----산업위기지
역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
자금 지원이 「산업발전법」
제33조에 따라 「중소기업진흥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
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
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
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
청할 수 있다.

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

	<u>자금 지원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/u>
제16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</u>에 도로,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</u>에 있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	제16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<u>산업위기지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<u>산업위기지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7조(인력양성 지원 등) 국가	제17조(인력양성 지원 등) -----

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산업위기대 응특별지역</u> 내 근로자,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.	----- <u>산업위기지 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8조(연구개발 활동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산업위기대 응특별지역</u> 내 연구개발,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 업·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8조(연구개발 활동 지원) ---- ----- <u>산업위기 지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9조(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기지역기업의 경영·기술·재 무·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 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1. <u>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</u> 의 사 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.·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19조(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산업위기지역</u> ----- ----- 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지원사업의 연계·우선지	제20조(지원사업의 연계·우선지

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, 기술개발, 인력양성, 창업,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,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원) -----
산업위기지역에서-----

-----.

제20조의2(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책무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
	<u>장과 시·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